

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s for
Korean Enterprises in Qingdao

김 석 철** Suk-Chul Kim

〈 목 차 〉

- I. 제 언
- II. 한·칭따오무역의 역사적고찰
- III. 한·칭따오 중재기관 중재절차 비교분석
- IV. 한·칭따오 중재절차 통일화 방안

주제어 : 칭따오 중재, 장보고, 나당, 중재절차

* 본 논문은 2005년 한국중재학회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임.
** 경원전문대학 무역과 부교수

I. 제 언

중국의 칭따오는 2004년 기준 한·칭따오 총 교역 규모는 54.83억불로 칭따오교역액의 22.5% 차지하고 있다. 칭따오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20.06억불로 칭따오 수출액의 14.4%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4.77억불로 칭따오 수입총액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칭따오 투자허가 기업은 2004년말 현재 총 누계 6,831건으로 정상가동중인 기업은 6,000개로 추산되며 투자건수나 금액 규모에서 칭따오에 투자한 국가들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국가가 한국이다.

칭따오에 거주하고 있는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교민은 약 5만이고 상주하는 교포는 약 10만이며, 한국인 여행자는 약 15만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¹⁾ 칭따오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칭따오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지역이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한·중 수교까지 40여년간 교류가 중단 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과 중국은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로 발전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칭따오는 역사적으로 볼 때 활발한 무역이 시작된 신라·당나라 때부터 신라 교역의 중심적인 지역이었다.

칭따오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것은 중국정부의 해외 자본·기술 유치정책 추진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이해관계의 합치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하필 칭따오에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되었는지, 또한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필히 분쟁도 발생 할 수 밖에 없는데 분쟁해결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은 교역의 규모로 볼 때 중요한 과제다. 이에 이러한 과제에 대

1) 중국 칭따오 한국영사관 제공자료임.

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교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칭따오와 한국 간에 최초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통일신라와 당나라와의 교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무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분쟁해결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칭따오와 한국의 중재전담기관인 청도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재절차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칭따오 무역의 역사적 고찰

1. 가장 가까운 산동성 칭따오

통일신라시대 한반도 북쪽은 발해가 가로막고 있어 육로를 통한 당나라와의 교류는 불가능하여 서해해상을 이용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실정이었다. 이에 신라의 내륙수로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한강 하류로 서해와 만나는 신라의 강화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해상 100해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당나라의 산동반도였다.²⁾ 그리고 당나라로서도 신라를 향한 통로는 당나라 동북지방의 땅끝인 산동반도의 등주연안지역이 신라와 발해로 항해하는 법적출항구였다.

일본의 불교구법스님 엔닌스님은 845년 7월3일자 그의 일기에서, 일본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당나라 관헌들에게 배길을 신청하였을 때 초주산양현사가 허락을 거절하면서 「초주는 극해지처(極海之處)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갈수는 있지만 머물수는없으니 스님은 지극지처인 등주

2) 허일, 최재수, 김상택, 이창역의 다수 공저,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국학자료원, 2001.7.30. P.317

로 가서 배를 타야 한다」라고 말한것으로 적고 있다.³⁾ 이로 미루어 볼 때 땅끝지역인 등주해역에 법적 출항구가 있었음을 짐작할수 있다.

한·중간에 있어 역사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된 시대는 통일신라와 당나라 였다. 이때 산동성은 신라인의 중국입국 첫관문으로서 신라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였던 지역이다. 엔닌스님의 847년 9월2일자 일기에 의하면 「정오 무렵 산동성 적산포 막야구에서 출항하여 적산의 막야구를 나와 정동을 향하여 하루 낮 하루밤을 향해하였다. 동년 9월3일 날이 밝자 동으로 신라국의 서쪽산들이 멀리 보였다. 바람이 정북으로 바뀌어 돛을 옆으로 기울여 동남을 향하여 하루 낮 하루 밤을 갔다. 9월4일 날이 밝을 무렵 산들이 있는 섬을 보았다. 높거나 낮거나 하여 이어져 있었다. 뱃사공에게 물었더니 신라국의 서부웅주(지금의 공주) 의 서쪽 땅이라 하였다. ...생략...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고이도 (지금의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정박하였다.」 라고 기술되어있다.⁴⁾

이상의 기록에서 엔닌 일행이 탄 신라의 선박은 9월2일 정오에 적산포 막야구 지금의 산동성 영성시 석도를 출발하여 정동 방향인 강화도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 하였으며 18시간정도 경과한 9월3일 날이 밝아질 무렵에 강화도 근교에 도착 하였다. 하루뒤인 9월4일 날이 밝을 무렵 지금의 충청도를 지나 밤10시경에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도착 하였다. 당시 돛단배를 타고 산동성 석도에서 강화도까지 18시간 정도면 도착 할수 있는 당나라와 신라간에 최단거리 항해노선이다. 요즘 인천-석도, 인천-청오간의 페리호가 12시간이 소요되니 시간차가 별로 없는 항해시간이었다.

산동성 석도에서 강화도로 연결되는 항로가 가장 가까운 노선이라면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그 이전 시대에 이용되었던 노선은 노철산수도 항로였다. 역시 출발지점은 산동성 등주 (지금의 봉래)였다. 이 항로에 대한 기록은 당나라 정원(貞元) 시대의 제상이었던 고탐(730~

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회창5년 (845년)7월3일

4) “회창 5년 9월 2일~4일

805)이 지은 지리학서⁵⁾에 봉래에서 북동으로 항해 하여 장산도 흙도(欽島)를 지나 남황성도(南隍城島)까지 300리이다. 북쪽으로 노철상수도를 건너 요동반도 노철산 동쪽의 대련시 여순구까지 200리이다.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가다가 대련만 청니와(靑泥洼),금현 청수하구, 석성도, 대양하구를 지나 압록강구 까지 800리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꺾어 평안남도 선천군,대동강,황해도 풍천군 도호북을 지나면 신라 북서지방의 황해도 풍천군에 이른다. 풍천과 강화도 사이를 지나 개성 서남방을 지나 강화도, 덕적도 지나 남양으로 간다. 압록강에서 남양까지는 천리이다. 남양에서 남동방향으로 육로를 이용하여 신라의 왕성까지는 700리이다. 라고 적고있다. 당나라, 발해, 신라의 해안가를 따라 등주에서 출항하여 요동반도대련, 압록강구, 평안도, 황해도, 강화, 덕적, 남양까지의 해수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안을 따라 항해 하였으므로 안전하기는 하였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산동성에서 황해를 건너 바로 신라를 향하는 항구가 개발되기 시작 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앞에서 설명한 영성시 석도항이다. 그리고 당나라 이지보의 원화군현 도지(元和郡縣 圖志)에 의하면 지금의 산동성 용구시도 신라,백제를 항해하는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⁶⁾. 그리고 산동성 유산시 유산포 항구도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개성4년(839년)과 회창7년(847년)의 기록에서 신라로 가는 항구임을 알 수 있다.⁷⁾ 그리고 엔닌일기 847년 6월10일자에서 “선편이 노산으로 떠나는데.... 그 후에 노산 방향으로 바다를 건넜다.” 기록에서 지금의 청도 주변인 교주만 노산포구도 신라출발 항구였다. 뿐만 아니라 엔닌일기 곳곳에서 교주만, 영산만에 이어 교남현의 대주산도 신라를 향한 주요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⁸⁾

5) 賈耽「皇華四達記」 「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

6) 李志甫「元和郡縣圖志」 “大人故城 (지금의 산동성 용구시) 今新羅百濟往還常由于此”

7) 개성 4년 4월 (839년) 17일에 “이곳은 등주 모평현 당양도촌(지금의 산동성 유산시 유산구 해안)의 남쪽해안인데..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신라가 있는데 바람이 좋으면 2-3일 만에 도착할수 있다.”

8) 엔닌일기 개성 4년(839_ 4월 2일 일기에서 “대주산은 신라의 정서쪽에 있는데 서풍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산동성의 해변은 신라로 가는 선박의 항구가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항구마다 신라인이 거주하면서 선박수리와 항해를 담당하고 있음도 엔닌일기에 기술되어 있다.

2. 신라인 거주지역 산동성

(1) 해운압 신라발해 양번사

당나라시대는 산동지방 관할 절도사가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를 겸하고 있었으며 황해해상무역에 대한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신라와 발해에 가장 가까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신라와 발해 등 한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 황해를 사이에 두고 신라와 발해가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당나라 정부에서는 고구려인 이정기를 산동성을 중심으로한 화북지방 전체를 관할하는 평노치 청절도사로 임명하여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를 겸하게 하였다.⁹⁾

이 지역이 신라·발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과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 산동지방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았으며 또한 많은 신라인이 왕래하면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음이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이정기 절도사는 아들 손자 까지 3대에 걸쳐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당나라 황실의 명령을 거역하고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해 오다가 당나라 황실에 의해 손자 이사도가 참수당하기 까지 60여년간 통치하였다. 그 후에는 장보고의 부하 장영이 적산지방의 구당 신라소¹⁰⁾의 책임자 이면서 평노군절도동십장겸 등주제군사 압

이나 북서풍을 만나면 필시 월경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월경이란 신라해안이다. 회정 7년(847) 윤 3월 17일 엔닌은 대주산에서 신라인 의 배를 만난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9)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란 신라,발해와 관련된 모든 해상업무와 거주민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10) 句當新羅所 : 당나라에 살고 있는 신라인의 일상 사무를 보는곳. 허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역 외 공서 <장보고와 황해 해상 무역>

위를 겸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 하였다. 즉, 장영의 자리는 평노치청절도사의 하부 조직의 장으로서 군사권까지 행사하는 당나라 주요지방조직으로 이정기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맡아 온 것이다.

(2) 수십만 명의 신라인 거주지

이정기 일가가 지배한 지역이 하북, 산둥, 강소, 안징지역으로 남쪽의 명주에서 북부의 등주까지이다. 이 지역의 황해 해안지역에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신라, 고구려(발해), 백제인이 살았다.¹¹⁾ 이정기에 이어서 장보고는 이들이 있었기에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나라, 신라, 일본 등의 동북아 지역의 무역을 총괄한 해상왕, 무역왕이 될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재당 신라인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은 없으나 엔닌일기 등에 나와 있는 자료로서 추정할 때 명주에서 등주까지 해안지역에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엔닌일기에 의하면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은 820년경에 장보고가 건립한 사찰로서 장보고 휘하인 장영, 임대사, 왕훈등 3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으며, 장보고의 시주로 연간 500석의 소작료를 받는 엄청난 규모의 농사짓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주스님 24명 사미승 2명 공양주와거사가 3명 등 총 29명의 상주 식구가 있었다. 그리고 법회때는 200~250명의 신도가 참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신라인은 참가신도 규모와 소작료 500석의 경작자 농민들로 짐작할 때 이천명 이상 수천명까지 거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엔닌의 회장 5년 7월 일기에서는 초주에서 신라방을 방문 하였을 때 유진언이 총관직을 맡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때 [방]은 리, 향보다는 크며 주, 현보다는 적은 행정단위이다. 일백 호가 리이고 다섯 개의 리가 향이다. 그리고 당육전(唐六典)에 의하면 오천인치총관1인

1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개성4년 (839년) 6월7일 일기

(五千人置總管一人)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초주에 신라인이 5천명은 거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기에서 일본견당사 사절단이 숙련된 신라인 해기사(海技士) 60명을 일시에 고용하였다고 하는 기술에서 초주에 신라인 해기사가 수백명은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방은 사주(泗州)주의 연수현(連水縣)에도 있었으므로 연수현에도 5천명 가량의 신라인이 살고 있었다.

엔닐일기에서 엔닐일행이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많다. 신라인 집단 거주지역인 유산포(乳山浦)에서 압위를 마중나온 신라인 30명과 여자들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가는 곳마다 지역관리 안내, 통역, 항해 등 엔닐스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신라인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엔닐일기에는 황해 해변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황량한 광경이었으며 해주에서 등주로 가는 길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은 좁고 초목이 덮혀있고 진흙에 빠져 안내원이 없으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나라 현지인의 마을은 거의 없었으며 신라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한·칭따오 중재기관 중재절차 비교분석

1. 분석범위와 방법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는 상호간에 집행이 보장되는 중재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의 칭도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절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기관의 중재제도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칭도의 제도상의 차이점을 파악한 후, 칭따오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상거래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비교분석

1. 총칙	<p>총칙의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중재의 분류), 제3조(사무국), 제4조(중재인명부), 제5조(중재판정부), 제6조(중재서기), 제7조(중재의 대리), 제8조(비공개)</p>	<p>-총칙의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중재대상), 제3조(중재합의), 제4조(중재합의 종류), 제5조(중재합의 효력의 독립성), 제6조(중재위원회의 합의 효력 및 관할권 확인의 권한), 제7조(중재합의 효력의 이익제기), 제8조(중재합의) 제40조에 비공개 규정이 있다.</p>	<p>-KCAB는 중재절차진행에 목적을 두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도는 절차진행과 중재의 대상, 합의 등 한국에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절차 진행의 목적은 양쪽 모두 공정, 신속에 두고 있으며 비공개 원칙을 취하고 있다.</p>
2. 당사자 합의	<p>제2장 (당사자의 합의) 이규칙이나 중재원 중재를 합의한 경우 이규칙중 중재절차규정을 중재계약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에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재를 합의한 것으로 본다.</p>	<p>차이가 없다.</p>
3. 중재신청	<p>-제3장 중재신청 제10조(신청)에서 -중재신청서에 중재신청서, 중재합의서, 위임장과 중재비용을 사무국에 예납한다. -중재신청서 기재사항은 당사자성명 및 주소, 대리인 성명주소, 중재신청 취지, 중재신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이다. 제11조(접수, 통지) -10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하고 쌍방당사자에게 통지한다.</p>	<p>-제2장 중재신청과 수리 제9조, 10조, 11조에 한국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중재비용은 중재위원회의 수리통지 받은 후 예납한다.(제14조) 제12조에 수리조건이 부합된 경우 5일 이내에 수리하고 수리여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에 접수수리후 10일 이내에 중재규칙, 중재인 명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p>	<p>-규정상 의 표현은 다소 다르게 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중재비용 한국은 중재신청서에 청도는 수리통지 받은후 예납한다. -수리통지 기간 한국에는 없으나 청도는 5일 이내로 되어 있다. -중재규칙등 송달기간 청도는 10일내로 되어 있으나 한국은 없다.</p>
3. 중재신청	<p>제12조(답변) 국내 중재는 15일 국제 중재는 30일 이내 답변서 사무국에 제출한다.</p>	<p>제13조와 63조에서 피신청인은 국내건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내에 사무국에 답변서 제출해야 한다.</p>	<p>-한국, 청도 양측 모두 답변서 제출은 국내는 15일 국제는 30일 내이다.</p>

<p>3.중재신청</p>	<p>제14조(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중 반대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판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병합심리 -접수,통지,답변은 중재신청과 같다.</p> <p>제16조(신청,답변의 변경,보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판정부 거절할 수 있다.</p>	<p>제15조에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하여 5일내에 수리여부 결정하고 반대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10일내에 신청인에게 반대신청서류 송달해야한다.</p> <p>제15조에서 중재청구의 포기,변경을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중재원은 제한할 수 있다.</p>	<p>-수리통지 5일내, 반대신청서류 송달기간10일이내 청도는 있으나 한국은 없다.</p> <p>-동일하다.</p>
<p>4.조정</p>	<p>제18조(조정) -접수후 국내 15일,국제30일 이내에 쌍방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에 회부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에서 1인 혹은 3인의 조정인 선정한다. -30일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료되고 화해판정 방식으로 처리된다.</p>	<p>제44조에서 -중재판정부는 판정전에 조정선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불성립되면 즉시 판정해야한다.</p>	<p>-한국은 조정인단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인단이 새로이 구성되나 -청도는 중재인단에서 중재판정 이전에 조정한다</p>
<p>5.중재인선정</p>	<p>제20조(당사자 합의 선정)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합의대로 선정하여 국내15일,국제30일 이내 사무국에 취임수락서와 함께 제출한다 -당사자가 1인씩 선정한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한 경우 합의된 선정기간내 선정하지 못하거나 사무국 선정통지 받은후 국내 15일 국제30일 내에 선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에서 선정한다.</p> <p>제21조(사무국에 의한 선정) -사무국은 중재인 명부에서 후보수인을 선정하여 당사자에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국내 15일 국제30일 내에 의장 중재인과 중재인으로 구별 희망순위 기재하여 반송한다.</p>	<p>제20조에 3인중재인의 경우 각자가 중재인 1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원 주임에게 1인 지정을 위탁하며,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원 주임에게 위탁한다.</p> <p>제22조와 62조에 중재권이 접수될날로부터 국내10일내 국제30일내에 중재인 선임,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원 주임이 결정한다</p> <p>사무국 선정기준이 없다.</p>	<p>-중재인을 당사자가 국내건 KCAB 15일 청도10일내,국제건 각 30일내에 선임하지못하면 KCAB는 사무국에서 청도는 주임이 선정하도록 되어있음.</p> <p>-KCAB는 사무국 선정방법이 규정된 반면 청도는 객관적 규정이 없이 주임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도에는 제3국 중재인 선정규정없다.</p>

<p>5. 중재인 선정</p>	<p>-회망순위 반송이 없는 경우등의 경우는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보고 순위조정하여 순서대로 취임 수락서 받는다.</p> <p>제22조(중재인 선정의 제한)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으로 제3국인을 요구하면 중재인 명부에서 제3국인을 중재인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한다.</p> <p>제23조(중재인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에서 1인 혹은 3인을 선정한다.</p>	<p>유사조항 없음.</p> <p>제19조에서 중재판정부는 3명 혹은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수석 중재인을 둔다.</p>	<p>동일하다</p>
	<p>제 24조(중재인 선정통지) -사무국은 당사자,중재인 모두에게 선정된 중재인의 성명,주소,직업을 서면으로 통지한다.</p> <p>제25조(중재인의 부적격고지) 선정중재인은 자신이 공정성,독립성에 의문을 야기시킬수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무국에 고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15일내에 기피신청해야 하며 기피신청을 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할수 없다.</p> <p>제26조(중재인의 보필) 중재인 결원되었을때는 위 방식에 의거 보필선정한다.</p>	<p>제23조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한다.</p> <p>제24조에 사건당사자 또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근친친척인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경우,은 밀하게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인은 기피해야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할수 있으며 5일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새로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p> <p>제23조에 출장,출국,병,기피사유 기타 사유로 중재를 할수 없게 된 경우 보필 선정한다.</p>	<p>청도가 보다 구체적이며 당사자 기피조항도 있다.</p> <p>동일하며 청도가 보다 구체적이다.</p>
	<p>제 27조(심리일시,장소) 일시,장소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며 심리개시 국내 10일 국제2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p>	<p>제31조와 64조에 중재판정부가 심리일자 국내5일,국제15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p>	<p>한국보다 청도가 5일씩 빠르다.</p>

6. 심리절차	<p>제28조(속기록) 당사자 요구가 있으면 진술이나 증인의 녹음과 속기록 준비한다.</p> <p>제32조(심리연기, 속행) 직권또는 당사자 요구에 의해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일자는 국내 15일, 국제30일 이내에 심리해야하며 2회 이상 연기하지 않도록 한다.</p>	<p>제41조에 심리상황, 진술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p> <p>제31조에 심리전 3일내에 심리연기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5일, 15일 통지. 기한 제한은 없다.</p>	<p>한국은 선택이나 청도는 필수다.</p> <p>-한국은 연기일자 제한이 있으며 청도는 연기청구일자 기한은 있으나 통지 기한과 심리 재개기간 규정은 없다</p>
	<p>제37조(당사자 불출석) -당사자 일방이 출석이나 심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응자가 제출한 서류증거를 진술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를 심리할 수 있다. -쌍방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중재절차종료 선언 할 수 있다.</p>	<p>제32조에 신청인이 심리에 불출석하거나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경우에는 결석판정 할 수 있다.</p>	<p>청도의 경우 신청인이 불리하여 퇴장하면 중재신청이 철회된다.</p>
7. 중재판정	<p>제48조(중재판정)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한다.</p> <p>-과반수 판정 인정하면서 1인 불참의 경우 2인 판정 인정한다.</p> <p>제49조(판정의 형식) 서면으로 작성하고 과반수 이상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p>	<p>제48조와 65조에서 중재판정부 구성후 국내3개월, 국제6개월 이내에 판정한다.</p> <p>제46조에서 다수중재인 의견에 따라 판정하며 다수가 아니된 경우에는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p> <p>제49조와 제50조에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원이 날인하며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서명 할 수도 있다.</p>	<p>-판정기간 기준이 다르다.</p> <p>다수결원칙은 같으나 수석의견으로만 판정 될 수 있다.</p> <p>-청도는 수석중재인만의 서명으로도 판정이 성립될 수 있으나 한국은 과반수 합의는 되어야한다. 중재인 날인이 추가되고 수석 단독판정도 가능하다.</p>
8. 신속절차	<p>제56조(적용범위) 2천만원 이하의 국내중재건이다.</p>	<p>제57조에서 30만 위안화 이하 건이다.</p>	<p>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나 청도는 국내, 국제 구별이 없다.</p>

8. 신속절차	<p>제57조(중재인선정) 사무국에서 1인중재인 선정한다.</p> <p>제58조(심리절차) 심리개시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p> <p>제59조(판정) 1회 심리를 원칙으로하며 심리종결 일로부터 10일내에 판정한다.</p>	<p>58조에서 당사자가 접수 수리후 5일 이내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중재인 주임에게 위탁하며 중재인 주임은 즉시 1명 선정한다.</p> <p>규정없다.</p> <p>제58조 59조에서 심리회수 제한없으며 제60조에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2개월이내 판정해야한다.</p>	<p>청도에서는 중재인 선임 기간 규정</p> <p>청도 심리통지기한 3일 제한이 없다.</p> <p>청도 심리회수 제한없으며 판정일 기준은 한국과 청도가 다르다.</p>
---------	--	---	---

3. 절차상의 차이점

(1) 총칙

대한상사중재원은 절차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사무국, 중재인명부, 중재 판정부, 중재서기, 중재대리인, 절차 비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 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은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대상, 중재합의, 중재합의의 종류, 중재합의 효력의 독립성, 중재위원회의 중재합의 효력 및 관할권의 확인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절차 비공개는 청도는 총칙이 아닌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 합의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규칙이나 중재원중재를 합의한 경우 이 규칙을 중재절차규정을 중재계약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청도 중재위원회 규칙에도 유사 규정이 있다.

(3) 중재신청

1) 중재신청서 기재사항

중재신청서와 기재 내용은 당사자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중재신청취지, 이유, 입증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중재비용 예납

중재비용예납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시에 해야하나 청도는 접수수리후 하도록 되어 있다.

3) 접수 수리

접수 수리여부 결정기간은 대한상사중재원은 규정이 없으나 청도는 접수수리여부를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결정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 있다. 수리 거절의 경우 수리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통지 해야하며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지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접수수리 통지후 10일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규칙, 중재인 명부 등을 송달해야 한다.

4) 답변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기간은 국내 15일 국제 30일 이내로 한국과 청도가 동일하다.

5) 반대신청

반대 신청에 대한 수리여부결정통지기한은 청도는 5일로 되어 있으나 한국은 없다. 그리고 반대신청서류는, 청도10일내에 반대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이 있으나 한국은 없다.

(4) 조정

조정은 한국은 중재개시이전에 당사자 쌍방의 요청의 의하여 조정인단을 구성하여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청도는 중재 판정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판정을 하여야한다.

(5) 중재인 선정

1) 당사자 선정

중재인 선정은 한국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 할 경우에는 국내15일 국제30일 이내에 선정하여 취임수락서와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동기간 내에 선정하지 못한 경우와 사무국의 중재인 선정 통지를 받은 후 국내15일 국제30일 내에 선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에서 선정한다.

2) 사무국선정

사무국은 중재인 명부에서 후보 수인을 선정하여 당사자에서 송부하고 양당상자는 국내15일 국제30일내에 의장중재인과 중재인으로 구별하여 희망순위를 기재하여 발송하고 희망순위 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순위로 보고 순위를 조정하여 순서대로 취임수락서를 받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3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도는 3인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1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주임에게 1인 지정을 위탁하며,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주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의 중재인 선정에 대한 경우 기준이 없다. 이 경우 다른 중재기관들과 청도중재위원회 간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의장 중재인의 선임에 있어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므로 실질적으로 주임이 선정하게 된다. 타국에서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들이 의장을 선정함으로써 통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가치 중국에서는 임의 중재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중재인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도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3) 제 3국 중재인 선정

한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제3국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청따오는 이런 규정이 없다.

4) 중재인수

중재인수는 중재인 선정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수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인 혹은 3인으로 한다.

5) 중재인 부적격 고지

중재인 부적격 고지는 한국은 중재법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을 기피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재규칙에는 중재인 본인이 사무국에 부적격을 고지 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다.

그러나 청도는 중재규칙에 중재인 본인의 부적격고지와 당사자의 중재인 기피신청 규정이 있으며 기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심리 절차

1) 심리개시일시·장소통치

한국은 심리개시일을 심리개시일 국내 10일전 국외 20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도는 한국보다 5일씩 빠른 국내 5일전 국외 15일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속기록

심리의 속기록은 한국은 당사자 요청이 있을때만 의무 사항이나 청도는 무조건 기록해야한다.

3) 심리연기·속행

심리 연기는 연기일부터 국내15일 국외 30일이내에 알리는 조건으로 .연기 할수 있으며 2회 이상은 연기 할수 없다. 청도는 심리개시 3일전에 연기 요청 할수 있으며 제한 규정은 없다. 한국은 심리연기 요청기간이 없는 반면, 청도는 3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 개시 기간은 한국은 15일,30일 기간이 있으나 청도는 없다.

4) 당사자 결석심리

당사자 결석심리와 판정에 대해 한국은 심리참석불응자가 제출한 서류등을 보고 일방참석으로 심리하고 판정 할 수 있으며, 쌍방 모두 불참하면 중재절차종료를 선언할수 있다. 그러나 청도는 신청인이 불참석하거나 퇴장할 경우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고, 피신청인이 불참석이나 퇴장할 경우에는 결석 판정 할수 있다.

청도의 경우 중재심리중 신청인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퇴장 할 경우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문제점이 있다.

(7) 중재판정

1) 중재판정기간

중재판정기한이 한국은 심리종결로부터 30일이내이나 청도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부터 국내건을 3개월이내 국외건은 6개월 이내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판정형식

판정형식에서는 한국을 다수결원칙으로 2인이상동의로 2인 이상의

판성문 서명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도는 다수결 원칙이나 다수결이 아니 될 경우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 할 수 있다. 한국은 다수결 합의가 아니될 경우 판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청도는 수석중재인이 판정으로 결정 할 수 있다.

(8) 신속절차

1) 적용범위

적용대상이 한국을 2천만원이하이고 청도는 인민화폐 30만원(약 2천 1백1십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1인중재인은 제도는 같다.

2) 중재인선임

중재인선임기간은 청도는 접수수리후 5일이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은 중재인 선임 기한이 없다.

3) 심리절차

한국은 심리 개시 3일전에 심리일을 통지해야하나 청도는 없으며 판정 기간도 한국은 1회 심리원칙에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이내 판정해야하나 청도는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2개월이내 판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차이점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 내용에서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 하였다.

IV. 한 · 칭따오 중재절차 통일화 방안

한국과 칭따오간의 무역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의 실질적인 무역의 효시라고 할수 있다. 오래전

당나라 양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와 당나라간에 교역이 시작 된 후 해상왕 장보고는 신라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당나라, 일본, 동남아국가, 이슬람등 세계화 지역으로 확대된 사무역시대를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무역시대를 열었다.

산동성의 청따오 적산 등 주요해변은 나·당무역의 주요 거점이었다.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후 고구려, 백제 등의 유민들이 산동성에 이주해 살고 있었고 신라의 많은 유학생과 유학승 그리고 파견원까지 함께 살면서 신라방이라는 거대한 자치구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동성 청따오 등 해안지역은 신라인들이 수만 혹은 수십만가까이 살았을 정도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15년 사이에 산동성 청도에는 한국기업이 6000개 가량이나 진출하였다. 이 같은 놀라운 현상은 우연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기업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따오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무역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분쟁해결 기구와 제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제간의 무역분쟁의 대표적인 해결제도인 중재를 청도중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이용이 매우 부진하며 분쟁발생 시에 그냥 포기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류증진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믿고 의뢰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장치가 없을 때에는 일시적 투자는 가능하겠으나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확대 투자하기에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청따오 등 산동성이 한국의 이국이 아니라 한국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며 중재절차 통일화는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재절차 통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양측의 중재전담기관

의 상호협력 기반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직원의 칭따오 중재위원회 파견근무이다.

파견 직원은 칭따오에서 분쟁에 대해 상담하고 칭따오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에 대해 한국 투자기업을 돕는 일을 하게되고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 중에 칭따오중재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한다면 칭따오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은 활발하게 될 것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칭따오 진출 한국 상공인들을 위하여 현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일 중재규칙의 제정이다.

한국과 칭따오간에 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규칙 단일안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칭따오 간의 중재에 이용될 단일중재규칙을 제정하게 된다면 절차 진행이 동일할 뿐 아니라 중재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호간에 높아질 것이다. 상기의 중재규칙비교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단일 중재규칙제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중재절차진행에 있어 중재규칙이 통일된다면 이질감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단일 중재인 명부를 공동작성 한다.

중재는 중재인이 하는 것이다. 중재인 명부를 상호협의 하여 작성하여 이를 한·칭따오간의 분쟁 발생에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판정내용의 통일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중재인 선정과 중재장소 결정방법의 통일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과 칭따오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중재인 선정방법이며 이 문제는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중재사건 유형에 따라 즉, 칭따오한인상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소재기업과의 거래, 칭따오, 혹은 중국소재기업과의 거래, 제3국기업과의 거래의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한국과 칭따오 중재기관에서 관할권별로 중재장소,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를 하게 된다면 중재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한국과 청따오가 공동 중재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완전한 하나의 상권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방법 등으로 발전해 간다면 언젠가는 분쟁해결에 관할한 국경과 이질감이 없는 누구에게나 편안한 분쟁해결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에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
- 김형근, 「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 (재)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2001.6.30
- 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익 외 다수 공저, 「장보고와 황해 해상 무역」, 국학자료원, 2001. 7.
-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839-847년
- 김석철.김진섭, “The Policy Implication of General Commissioner Chang Pogo in Korea’s Role as East-Asia Trade Center”, 「2001 해상왕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사) 한국무역학회, 2001
- 김성훈, “21세기 장보고 정신구현”, 「2001 해상왕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사)한국무역학회, 2001
- 김문경, “장보고.해상왕국의 사람들”, 「장보고 해양경영사 연구」
- 김문경, “당.일여비친 장보고”, 동양사학연구 제 50집
- 이용범,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슬람 상인의 무역품”, 한국사학 논증
- 이기동, “9-10세기에 황해중심 한.중.일 삼국의 해상활동”, 「진단학보」
- 朱江, “新羅 張保臯 海上貿易”, 「2001 해상왕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사)한국무역학회, 2001
- 朱江, “당과 신라의 해상교통”, 「장보고 해양경영사 연구」, 이진출판사,

1993

李成時, “9-10世記 東亞細亞와 新羅人”, 『2001 해상왕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사)한국무역학회, 2001

Warren Keegan, “The Rise of the Global-Transnational Enterprise :
Lessons for Korean Firms”, 『2001 해상왕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사)한국무역학회,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s for Korean Enterprises in Qingdao

Suk-Chul Kim

Trade between Korea and Qingdao, Sandongseung has been developed into Private Trade from the Tributary Trade of Silla. Today there are around 6,000 Korean Enterprises in Qingdao, being 22.5% of total Qingdao trades and 60% in the number of investments and monetary scale. Korea is in the first rank among Qingdao's trade partners.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is still in poor condition. It should be improved for the activation of trade. The big solution is the Un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it, First, The staff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hould be dispatched to 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Second, there should be common arbitration rules between two institutes.(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Third, a single arbitration panel should be made. Fourth, there should be the unification of methods in choosing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rbitrators. Finally, a common arbitration institute should be installed.

Key Words : Qingdao Arbitration, Chang Pogo, Shilla-Tang, Arbitration Procedures